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설·추석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아 그들의 공훈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단 지적이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혜택을 마련코자 ‘중복지급 금지’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위문금의 지급근거를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위문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나.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중복지급 금지 단서 삭제(안 제9조제2항)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을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을 각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민의 책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모든 구민”을 “구민”으로, “나라사랑”을 “나라사랑정신”으로, “동작구”를 “국가와 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

으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다만” 을 “다만,”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망위로금” 을 “위로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작구” 를 “구”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망위로금” 을 “위로금”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을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을 “범위에서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이하 “수당 등” 이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법령” 을 “국가보훈관계 법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당” 을 “수당 등” 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을 “별지 제2호서식의”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당” 을 “수당 등” 으로 한다.

② 수당 등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보훈예우수당·위문금 신청용)

본인은 서울시 동작구 보훈예우수당·위문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대상자 자격 판정자료(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지급관련 자료(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2. 수집정보의 활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예우수당·위문금 지급 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자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기타 보훈예우수당·위문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 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 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u>국가보훈관계법령</u>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 라. (생략)</p> <p>2. (생략)</p> <p>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 ----- ----- <u>국가보훈관계 법령</u>-----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국가보훈관계 법령”----- ----- -----.</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p>	<p>제3조(적용대상) ----- <u>다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u> <u>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u> <u>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u> ----- -----.</p>
<p>제4조(구민의 책무) <신 설></p>	<p>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p>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동작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
나라사랑정신-----
--- 국가와 구-----
-----.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

범위-----
-----.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 등)
① -----
----- 범위-----

-----.
----- 위로금

-----.

② -----
구-----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로금-----

-----.

제9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월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11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 ① ----- 범위에서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

② 수당 등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서 삭제>

③ 국가보훈관계 법령-----

-----.

④ 수당 등-----
별지 제2호서식의 -----
-----.

⑤ 수당 등-----.

제11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
----- 따라 -----
-----.

② ----- 따른 -----
----- 따라 -----
-----.